

1999. 9. 17

제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도시위원회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8. 26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1999. 8. 27
다. 상정일자 : 1999. 9. 14 (제52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가. 제안이유

- 수돗물을 생산원가의 61% 수준으로 낮게 공급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부채총액 390억원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연35억원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워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함.
- 년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간접적인 절약효과도 거두어 경영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수도 사용료 인상

구 분	읍 면지역	동 지역
평균 인상을	16.8%	16.8%
업종별		
[가정용, 업무용]	20%	20%
[영업용, 유통 1, 2종]	15%	15%
[전용 공업용]	10%	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동수)

● 법적검토

- '97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기본 요금제가 폐지되고 요금수준은 생산원가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물가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하라는 지침에 의거,
- '97. 9. 30일 조례를 개정 구경별 정액요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읍면, 동지역 평균 34%를 인상한 바 있음.
- 금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회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음.

● 행정적 검토

- 제천시 상수도사업 운영현황을 종합해 볼 때 수돗물은 다른 소비성 물거나 공공요금에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하여 비현실적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과다한 부채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수도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코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 금번 개정안은 읍·면·동지역 평균 16.8%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용과 업무용은 20%, 기타는 15%가 인상됨.
타시군 요금인상 및 생산비 대비 판매비 현황을 비교해 볼 때 천안시와 9개시 중에서 제천시의 현실화율이(61%로) 저조한 편이며 충북도내 상수도요금 인상율을 볼 때도 제천시의 인상율이 평균 16.8%로 가장 낮은 편으로 타시군에 비교해 과다한 요금인상은 아니라고 사료됨.

- 앞으로 점차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단지, '97년 9월 기본수량에 대한 기본요금 체계가 완전히 바뀌면서 구경별 정액요금제도를 실시하면서 2년이란 시간이 경과된 후 본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사항과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살펴보시고 가정용 물 사용량은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요금 인상시 주민홍보와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임.

- 그리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요금체계를 비교해 볼 때 가정용과 영업용은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62%, 업무용은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75% 수준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수도요금의 단가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점이라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질의 1) 수도요금이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서로 상이한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차별을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시·군통합 당시의 약속사항이지만, 이질적 요소들을 점차 해소하여 실질적 통합을 이루고, 앞으로 한 식구로, 한 자치 단체로 융화되기 위해서라도 차별은 두되 점차 간격을 줄여 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반영안된 사유는?

(최상귀 위원)

답변) 수도요금의 차등적용은 시·군통합 당시 대군민 약속사항으로 아직까지는 지켜야할 약속사항이며, 상수도 부채 390억원이 상환 완료되는 2011년에 가서 적자누적이 해소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봄.(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질의 2) 동지역 상수도는 광역화, 시스템화 되어 과학적으로 수질관리가 되고 있으며, 위생적이지만 면 지역은 간이상수도 급으로 시설도 불량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지는데 근본적인 개선 대책은? (김병창 위원)

답변) 면단위 상수도의 열악한 시설은 인정하며, 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1m 노후관 교체에 1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투자비가 대단위로 소요되어 근본적인 대책은 어려운 실정임.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질의 3) '97년 9월 조례가 개정된 후 구경별 요금제를 2년간 실시해 본 결과 적자폭이 어느정도 축소되었으며, 기채상환에 기여했는가?

이번 인상으로 연간 6~7억 수익증가로 경영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는가? (김병창 위원)

답변) 구경별 요금제를 시행했어도 기채상환에 기여하지는 못하고, 적자폭 감소에는 다소 효과가 있었으나 관교체등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 요금인상으로 경영개선 효과는 크지 못함.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5. 소수의견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